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「검찰청법」 폐지와 「공소청법」, 「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개정 「형사소송법」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되었는바, 이에 맞도록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련 부처와 협의 예정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검찰청”을 각각 “공소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검찰관은”을 “군검사는”으로 한다.

제58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를 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중대범죄수사청”으로 한다.

제76조제1항 전단 중 “검찰청의 검사”를 “공소청의 검사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처검사”로, “검찰청에”를 “공소청, 고위공직자수사처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검찰청으”를 “공소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”로 한다.

제77조제1항 중 “검찰청의 검사”를 “공소청의 검사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찰청 관할구역”을 “공소청 관할구역”으로, “검찰청 검사”를 “공소청 검사”로 한다.

제80조 전단 중 “검찰청”을 “공소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압수물 수리통지서) ① (생략)	제5조(압수물 수리통지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검찰서기는 다른 군검찰부 또는 <u>검찰청</u> (이하 “군검찰부등”이라 한다)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송(移送) 또는 환부촉탁을 받아 압수물을 수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압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해당 관서에 보내야 한다.	② ----- ---- <u>공소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58조(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) ① 군검사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<u>검찰청</u> 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 압수물을 운반하기에 불편하거나 보내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소속 군검찰부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한 상태로 이송할 수 있다.	제58조(다른 군검찰부등으로의 이송) ① ----- ----- <u>공소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 군검사는 압수물이 있는 사건을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<u>검찰청</u> 의 검사에게 이송할 때에는 이송결정서 등에 압수물	② ----- ----- ---- <u>공소청</u> ----- -----

송부, 소속 군검찰부 보관 또는
군검찰부 외 보관을 구별하여
적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압수물의 송부
없이 사건 이송을 받은 군검사
가 다시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
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사
건을 이송할 때에는 별지 제44
호서식의 사건 이송통지서로 원
군검찰부의 군검사에게 그 사실
을 통지해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
검찰관은 검찰서기에게 압수표
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해야 한다.
제58조의2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) 고위공
직자범죄수사처, 사법경찰관서
및 특별사법경찰관서에 압수물
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
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76조(촉탁수리) ① 검찰서기는
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
검찰청의 검사로부터 압수물에
관한 처분의 촉탁을 받았을 때
에는 공조사건부에 정해진 사항
을 적고, 별지 제2호서식의 압

-----.

③ -----

----- 공소청 -----

-----.

④ -----
군검사는 -----
-----.

제58조의2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
등에 대한 압수물 송부) 고위공
직자범죄수사처, 중대범죄수사
청 -----

-----.

제76조(촉탁수리) ① -----

공소청의 검사, 고위공직자범죄
수사처 수사처검사 -----

수물 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군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에 송부해야 한다. 이 경우 검찰서기는 압수표를 작성하고 그 압수표에 촉탁받은 사실을 적은 후 소속 군검찰부의 압수물 처분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검찰서기는 촉탁한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으로부터 처분 결과의 회답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0호의2서식에 따라 촉탁결과를 회답하고, 압수표 및 공조사건부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.

제77조(환부수탁) ①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검찰청의 검사로부터 환부촉탁을 받은 경우 피환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5조와 제56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.

② 피환부인이 다른 군검찰부 또는 검찰청 관할구역으로 주거

----- 공소청, 고위공직자수사처에 ---
-----.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 공소청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-----

-----.

제77조(환부수탁) ① -----
----- 공소청의 검사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처검사-----

-----.

② -----
--- 공소청 관할구역-----

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그 군검찰부 군검사 또는 <u>검찰청 검사</u>에게 환부를 다시 촉탁할 수 있다.	----- ----- <u>공소청 검사</u>----- ----- --.
제80조(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) 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는 상소심을 수행하는 군검찰부의 군검사 또는 <u>검찰청</u> 검사로부터 압수물 송부지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이 경우 제59조를 준용한다.	제80조(상소사건 압수물의 송부) ----- ----- ----- <u>공소청</u> ----- ----- -----. -----.